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41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 안도걸·박홍배·양부남

조인철 • 전진숙 • 강유정

강준현 • 위성곤 • 정진욱

김영진 · 장경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반소비세로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법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인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업은 고속형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 규칙에 따라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시외고급고속버스로 분 류되고 있음. 현행법 및 시행령은 이 중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시외고급 고속버스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아 이를 이용하는 여객운송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와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시외우등고속버스가 더 이상 고급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과 종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의도를 고려했을 때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운임과 운행형태가 시외우등고속버스와 비슷한 수준인 새마을 호(일반철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므로 시외우등고속 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시 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가목).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7호가목 중 "고속버스"를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외고급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 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대한 면세)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			
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7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			
다.	.		
가. 항공기, <u>고속버스</u> , 전세버	가 <u>시외고급고속버스</u>		
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			
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			
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8. ~ 20. (생 략)	8. ~ 2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